

무배당 나를지켜주는상해보험2009 상품요약서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보험가입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Q)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Q)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① 가입나이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약관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10/20년	전기납	18~70세	월납 연납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수술					
일반상해수술(1~5종)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깁스치료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18~60세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18~70세				
일상생활배상책임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자가용)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적용이율 : 2.00%(연복리, 확정이율)
- ②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담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수술, 일반상해수술(1~5종),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깁스치료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일상생활배상책임,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자가용),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	10/20년	10/20년	월납, 연납

- ③ 만기환급금
 - 1종: 기본계약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2종: 기본계약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0%
- ④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또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

입하여야 합니다.

- ⑤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또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⑥ 응급실내원비(응급) 또는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담보를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⑦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 발생시 피보험자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됩니다.
 - (3) 위 (1)에 따라 보험료가 납입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주1)}	지급금액
기본 계약	만기환급금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	- 1종 : 보험가입금액 × 10% - 2종 : 보험가입금액 × 0%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장해지급 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 우	보험가입금액 (단, 최초 1회한)
선택 계약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 :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 ^{주2)}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병원에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 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주1)}	지급금액	
	일반상해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수술 (1~5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1종	보험가입금액의 4%
			2종	보험가입금액의 6%
			3종	보험가입금액의 10%
			4종	보험가입금액의 20%
			5종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주3)} ,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1사고마다 최고 500만원 한도)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
	일반상해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치아파절제외)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화상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화상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 ^{주4)}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 ^{주4)}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실 내원 1회당)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주1)}	지급금액
	(응급)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장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장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중대한특정상해 수술 (뇌,내장손상)	보험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중대한 특정상해(뇌, 내장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 뇌손상: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중대한 특정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뇌에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중대한특정상해분류표에 정한 내장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 수술 또는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단, 최초 1회한)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 ^{주5)} 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기간 중 아래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 보상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대인/대물 각각 자기부담금 20만원)	최고 1억원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사망 :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주1)}	지급금액
	(3~100%) (자가용)	장해상태가 된 경우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주2)}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3~100%) (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 :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주2)}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 교통 ^{주6)}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주7)} 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 :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주2)}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자가용)	보험기간 중 신주말 ^{주8)} 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 :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주2)}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3~100%) (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신주말 ^{주8)} 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 : 보험가입금액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주2)}
	신주말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자가용)	보험기간 중 신주말 ^{주8)} 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신주말 ^{주8)} 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주1)}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연금 (체증형,월지급형) (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 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주9)} 지급	500만 (매년 2.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60개월간 지급)
	교통상해사망연금 (체증형,월지급형) (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주9)} 지급	500만 (매년 2.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60개월간 지급)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연금 (체증형,월지급형) (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주9)} 지급	500만 (매년 2.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60개월간 지급)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연금 (체증형,월지급형) (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주9)} 지급	500만 (매년 2.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60개월간 지급)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 (자가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최소: 보험가입금액의 1%,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100%
	자동차사고부상 (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비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의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주1)}	지급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따라 지급 최소: 보험가입금액의 1%,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주2)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은 3~100%임

주3) 안면부는 이마 포함 목까지 얼굴부분, 상지는 견관절 이하 팔부분, 하지는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를 말함

주4) 5대골절이란 제 7차 개정 한국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함

- ①머리의 으깬손상 ②목의 골절 ③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④요추 및 골반의 골절
⑤대퇴골의 골절

주5) 강력범죄는 형법 제24, 25, 32, 38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상해와 폭행죄, 강간죄, 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를 말함

주6) 대중교통이란 아래와 같음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 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주7)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란 아래와 같음

1.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전을 제외)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교통사고

주8) 신주말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주9)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별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비운전자) 예시 참조)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에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이 상품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적용이율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0%입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40세, 상해 1급 기준)

담 보 위 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일반상해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0.000058	0.000022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방식은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시행세칙 I. 장기손해 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6.보험가격지수 비교·공시” 준용)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 40세, 상해1급,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3~100%) 1억원, 20년만기, 20년납)

[1종 만기환급형]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08.4	105.4

[2종 순수보장형]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12.0	109.6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지환급금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만기, 20년납, 월납
- 기본계약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1,000만원
- 선택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3~100%) 5,000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10만원, 일반상해수술 30만원,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7만원,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20만원, 일반상해골절수술 50만원, 일반상해화상진단 20만원, 일반상해화상수술 50만원, 5대골절진단 20만원, 5대골절수술 50만원, 깎스치료비 50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5만원, 응급실내원비(비응급) 2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100만원,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100만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5,000만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2만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5,000만원,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5,000만원,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1만원,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자가용) 20만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5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2,500만원

[1종 만기환급형]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63,520	3,700	1.4%
3년	790,560	101,040	12.8%
5년	1,317,600	201,860	15.3%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10년	2,635,200	507,650	19.3%
15년	3,952,800	753,360	19.1%
20년	5,270,400	1,000,000	19.0%

[2종 순수보장형]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04,600	-	0.0%
3년	613,800	-	0.0%
5년	1,023,000	40	0.0%
10년	2,046,000	57,180	2.8%
15년	3,069,000	41,760	1.4%
20년	4,092,000	-	0.0%

3)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